

◆머느리권씨 열전 27-3

## 향산 이만도의 부인, 지사 이중업의 어머니, 김락의 시어머니

(숙부인 권씨, 북야공파 32世, 권승하權承夏의 딸)

### 3대 문과 급제 3대 독립지사 5위의 안식처

봉화군 재산면 동면2리 바다실 마을 청량산 자락에는 위에 소개된 5위의 독립지사 묘소가 한데 모여 있다. 이는 국립묘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경우로,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현재 묘역의 상황과 조성 필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장 필요:** 현재 이 묘역은 공식적인 현충시설로 관리되거나 안내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3대에 걸쳐 조선의 학문과 의리를 지키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가문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후대에 알리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자원:** 이만도 가문의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이다. 문과 급제라는 특권과 명예를 누렸으나, 국난 앞에서는 모 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자처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귀한 가르침을 주며, 봉화 군이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다.

**주변 환경:** 묘역이 위치한 바다실 마을과 청량산 일대는 숲이 우거진 고즈넉한 환경으로, 참배객과 방문객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명상을 하기에 적합하다.



3대 문과 급제 3대 독립지사 5위의 안식처를 봉화의 자랑거리로 가꾸자! 사진 봉화일보

### 제안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선생과 동생 유천(柳川) 이만규(李晩奎) 선생, 그리고 아들 기암(起巖) 이중업(李中業), 머느리 김락(金洛), 손자 이동홍(李棟欽) 선생에 이르기까지 3대 문과 급제와 3대 독립 유공 가문의 독립지사 5위의 묘소가 있는 봉화군 재산면 동면2리 바다실마을 청량산 자락 조산봉(造山

峰,840m)묘역 일대를 국립묘지에 준하는 현충시설로 체계적으로 가꾸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 김락과 그 남편 이중업의 묘는 없다. 그들의 묘소도 같이 이장하여 성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내판과 표지판 설치:** 묘역 접근로와 묘역 내에 각 독립지사의 생애와 공로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참배로 정비:** 묘역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참배와 방문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기념 공간 조성:** 묘역 인근에 방문객들이 쉬며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기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독립운동가문의 정신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만도 가문의 묘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봉화군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국가적 현충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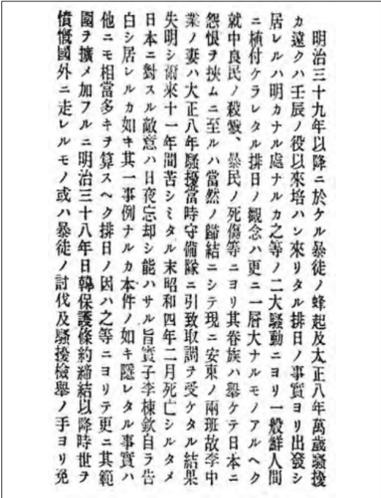
이만도 단식 자정하면서 며칠전 절명시를 남겼다. 胸中華血盡 / 此心更虛明 / 明日生羽翰 / 逍遙上玉京 / 自欺而欺人畏天又畏地... 無復枉窮谷 “가슴속의 피 다 말랐으니, 마음은 더욱 허명(虛明)하다. 내일이면 날개 돌아 옥경(玉京, 천상)으로 올라 소요하리라.” → 죽음 앞의 초연함과 영혼의 해탈 의식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였으니 하늘·땅이 두렵도다. 나를 거둬 저승사자는 어디 있나. 부디 현인들이여, 다시는 이 공곡을 찾지 마시오.” → 삶의 허위와 세속에 대한 단절 선언. 순결한 죽음의 결의

이에 대해 향촌(鄕鄒)은 삼가 담하여 말하게 되는 것이다.

忠肝金玉玉羅同/經世濟民蒼空通/赤纓英豪凝作凌/故山草木淚痕中

“충심은 금석과 옥처럼 견고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포부는 푸른 하늘에 닿아 있네, 붉은 끈으로 묶인 영웅호걸이 힘을 모아 치솟으니, 고향의 초목에도 눈물 자국이 배어 있구나.”



“메이지 39년 이후의 폭동과 대정 8년 만세운동 등으로 조선 사회의 배일 감정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민간인의 희생과 그 유족들의 고통은 일본에 대한 원한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안동 소재 가문의 사례처럼 조사 과정에서 실명과 사망에 이른 일들도 존재했으며, 이러한 숨겨진 사례가 많아 반일 감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한일보호조약 이후 시대적 억압에 반발한 이들은 국외로 도피하거나 폭도 토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여 머느리 김락여사가 만세운동 후 고향으로 실명한 기사 내용

사진 네이버

끝으로 임진왜란에서는 경상우도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이 되더니, 300년 뒤 일본의 제침략에는 퇴계 경강좌도의 퇴계 이항의 제자들이 의병이 된 것은 깊이 새길 일이다.

(글 권오철 기자)



향산고택(백동서당), 좌측은 원래 장소 안동시 예안면 토계리, 우측은 안동시 퇴계로 297-6로 이전 장소

##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 제3장 뿌리에 대하여

#### 5. 우리의 할아버지들

셋째로, 태호복희(太昊伏羲, B.C. 3511, 5대(代) 태우(太昊)의 환웅의 막내아들)

배달국(倍達國) 5대 태우의 환웅은 열두 아들을 두었다. 맏아들이 6대 태우인 다의발(多儀發) 환웅이며, 막내아들이 태호(太昊)이다. 이 태호(太昊)를 복희(伏羲)라고도 한다.

복희는 어느 날, 삼신이 자기 몸에 영(靈)으로 내리는 꿈을 꾸고 만가지 이치를 통찰하게 되자 곧 삼신산으로 올라가 제천(祭天)하고 천하에서 궤도(軌道)를 얻었다. 그 획은 세 번 끊어지고 세 번 이어져 자리를 바꾸면 세상이름을 미리 알게 되어 그 오묘함은 삼극(三極)을 포함하여 끝이 없었다. 8괘와 주역은 복희의 한역을 달리한 이름이다. 중국은 복희를 자기들의 시조(始祖)라 주장하지만 저들의 삼황오제(三皇五帝)는 모두 동이족(한민족)이다.(신시본기 - 神市本紀)

복희는 신사에서 태어나 우사의 자리를 세습한 후 뒤에는 청구(靑丘)와 낙랑(樂浪)을 거쳐 진으로 옮겨 수인 소우와 더불어 서토(西土)에 이름을 떨쳤다. 그 후손이 풍산(風山)에 흠어져 살았기 때문에 성(姓)을 풍씨(風氏)라 하였다. 여기서 서토(西土)에 이름을 떨쳤다 함은 한국의 12연방 중 수밀이(수메르) 등지에 퍼져 살면서 궤와 숫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밀기, 密記)

‘중국역대제왕록(中國歷代帝王錄, 1989, 상해군화출판사)에 보면, 제일 먼저 “태호복희의 성은 풍씨이며 동이족(東夷族, 한민족)”라고 했고, 사기(史記)의 저자인 사마천(司馬遷)도 ‘태호복희의 성은 풍씨이다’고 하였고, 중국 최고(最古)의 지리서(地理書)인 산해경(山海經)에는 ‘태호복희, 염제신농, 현원 등 8대(代) 임금들이 속신(조선)국에서 왔다’고 했다.

넷째로, 치우천황(蚩尤天皇, B.C. 2706, 자오지 한웅).

다음은 중국 사기(史記)의 첫 머리에 나오는 글이다.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며 성은 공손, 이름은 현원이라 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다. … 그러나, 치우가 포악하여 정벌할 수 없었다”라고 개국시대에 가장 두려웠던 인물이 ‘치우’였음이 중

국 최초의 개국사기에 적혀있다. 그러면 치우가 누구였기에 이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

14 대(代)를 지나 자오지 한웅이 나섰는데, 그는 귀신 같이 용맹이 뛰어났다. 그는 동두철액(銅頭鐵額, 구리 머리에 쇠 이마)을 하고, 큰 안개를 일으키며 광석을 캐고 병기를 만드니 천하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상에서는 그를 치우천황이라고 불렀다.(삼성기 전 하)

천황은 형제와 가문에서 장수가 될만한 사람 81명을 뽑아서 모든 군사를 맡기고 갈로산에서 철을 캐어 병기를 만들어 탁록(涿錄)을 쳐서 함락시키고 구혼으로 올라가 연전연승 하였다. 그 기세는 마치 질풍노도 같아 모든 적군이 겁을 먹고 항복하며 한 해에 무려 아홉 제후국의 땅을 함락시켰다.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양수를 거쳐 공상에 이르렀다. 공상은 지금의 진류(陳留)이며 유망이 도읍했던 곳이다. 그는 이 한 해에 열두 제후의 나라를 점령하니, 이때에 죽은 시체가 들에 가득하여 서토(중국 동북부 영토) 사람들이 두려워 숨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때에 유망은 소호와 연합하여 대항했으나, 천황은 예과와 웅호국을 큰 안개를 일으키어 적을 혼미케 하여 숲로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소호는 크게 패하여 유망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에 치우천황은 하늘에 제사하면서 천하의 태평을 맹세하고 다시 군사를 집결시켜 탁록을 포위한 다음 단순에 멸망시켰다(신시본기, 神市本紀).

다섯째로, 단군왕검(檀君王儉, B.C. 2333, 고조선 개국시조)

개천 후 1565년 10월 3일에 신인 왕검(神人 王儉)이라는 분이 있어 오가(五加)의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 있는 곳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드렸다. 그는 더없이 덕이 높고 어질어 하늘의 뜻을 이어나갔다. 이에 구한(九桓)이 모두 기뻐하여 임금으로 받들었다. 이분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신시(神市)의 옛법을 다시 회복하고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세워 나라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단군왕검은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 “하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가지라. 이런 까닭에 스스로를 살펴보자 자기의 마음을 알면 이로써 다른 이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느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잘 교화

## 증여세 절세 전략 ③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질문2)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을 담보로 자식(아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

**답변)**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고, 부모는 담보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가.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부모가 대신 상환해준다면, 그 상환액만큼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나. 따라서 자녀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빙, 통장 거래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만약 부모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일반적인 대출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예: 매우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으로 대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핵심은 자녀가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상환하는가입니다.

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

① 자녀의 상환 능력 확보: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직업, 소득 수준, 기존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② 대출금 상환 내역 관리: 자녀가 직접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부모의 담보 제공 목적 명확화: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대출을 돕기 위함이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기 위함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 결론적으로, 부모의 담보 제공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 사실상 부모가 자금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문3)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법조문 또는 예규, 판례는?**

**답변)** 부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직접적인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여의 개념과 다른 증여세 과세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증여의 기본 개념:

우리 세법상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이전되어야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자녀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빌린 돈에 대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조문 및 유권해설, 판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이 조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② 여기서 ‘금전 대출’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금전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부모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계산 등)

① 이 조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특히, 동법 시행령 제 27조 5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이익은 차입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그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이 조항이 바로 부모가 자녀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이다. 즉,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얻는 이익(예: 담보 제공으로 인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 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과거에는 ‘기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이 조항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리 변제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이다. 자녀가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자녀는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 라. 요약 및 결론:

① 부모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데, 이는 자녀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② 다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인해 자녀가 얻는 ‘부동산 담보 이용 이익’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 부모의 담보가 없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했거나,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의 경우임).

③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출 상환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④ 따라서 부모의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세법상 과세 기준(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⑤ 핵심은 ‘대출의 주체’와 ‘실질적인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다음호에 계속)

(다음호에 계속)